

2025년 8월

최신 노동뉴스

 노무법인 의림

대구 수성구 동대구로 390

☎ 053-719-2408

☎ 053-719-0019



- 차 례 -

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1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
(첨부 1)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3. 폭염 ... 2시간 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6
(첨부 2) 폭염 시 휴식시간 부여 관련 자료	
4.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	10
5.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금리는 단 1%	11
6.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기간 운영	12
7.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기획감독	13
8.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14
9. 고용보험 15시간 기준은 역사 속으로	15
10.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18
(첨부 3)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안내자료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21
12.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25.2분기)	24
(첨부 4) 신규화학물질 유해성 위험성 조사제도 개요 및 공표 명단	

1. 2026년 최저임금, 시급 10,320원

* 2025년 대비 2.9% 인상, 월 환산액 2,156,880원

○ 최저임금위원회는 7.10.(목) 15:00,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2차 전원회의를 개최함

- 이날 회의에서 위원장은 제10차 전원회의에서 제시된 공익위원 심의촉진구간 내에서 노·사의 수정안 제출을 요청하였으나
- 수정안 제출 요구에 동의하지 못한 민주노총 추천 근로자위원(4명)이 퇴장한 가운데 진행된 회의에서 노·사는 제9차, 제10차 수정안을 제출하고 합의 도출을 위한 노력을 이어감

구분	근로자위원(안)	사용자위원(안)
제9차 수정안	10,440원 (2025년 대비 4.1% 인상)	10,220원 (2025년 대비 1.9% 인상)
제10차 수정안	10,430원 (2025년 대비 4.0% 인상)	10,230원 (2025년 대비 2.0% 인상)

○ 2026년도 적용 최저임금은 공익위원의 중재와 노사의 협의 결과 17년만에 합의로 결정됨

- 합의된 최저임금안은 시간급 10,320원(월 환산액 2,156,88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전년대비 2.9% 인상된 수준임
- 2026년 적용 최저임금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는 고용형태별 근로실태 조사 기준 782천 명(영향률 4.5%), 경제활동인구 부가조사 기준 2,904천 명(영향률 13.1%)으로 추정됨

※ 참고: 월 환산 임금액 2,156,880원은

주 40시간 근무, 주휴수당 포함, 월 209시간 기준임

2. 2025년 하반기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최근 개정 시행되었거나 2025년 하반기에 새로 시행될 내용
(상세한 내용은 '첨부 1' 참조)

○ 「상습 임금체불 근절법」 시행

- 「근로기준법」 제43조의2~8 조문 개정/신설

- 추진배경 : 상습적인 임금체불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임금체불에 따른 제재를 사업주가 추가적인 비용으로 인식할 수 있도록 경제적 제재를 강화
- 주요내용
 - 상습체불 사업주* 신용제재, 정부지원 제한, 공공입찰 불이익
 - * (상습체불 사업주) 1년간 ① 근로자 1인의 3개월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 ② 5회 이상 체불 & 체불총액 3천만원(퇴직금 포함)이상
 - 명단공개 사업주에 대한 대한 출국금지 및 재체불시 반의사불벌죄 배제
 -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등으로 손해를 입은 경우 임금 등의 3배 이내 손해 배상 청구
 - * ① 명백한 고의로 인한 체불 또는 ② 1년간 임금 등을 체불한 개월 수가 3개월 이상 또는 ③ 체불 총액이 3개월 이상의 통상임금인 경우
- 시 행 일 : 2025년 10월 23일

○ 근로자 자발적 퇴사 시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추진배경 :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제도 개선을 통해 중소기업의 육아지원제도 활용 여건 개선
- * 저출생 대책 추가 보완과제(' 25.1.23.)에 포함
- 주요내용
 - 근로자가 자기 사정으로 인하여 육아휴직 등 종료 후 6개월 이상 근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육아휴직·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지원금 전액 지급
- 시 행 일 : 2025년 7월 1일

구분	현행 지급방식	개선 지급방식
육아휴직 지원금 육아기근로시간단축 지원금	• 자발적 퇴사시 사후지급금 (50%) 미지급	• 자발적 퇴사시에는 사후 지급금(50%) 지급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원 확대

- 추진배경 : 통상환경 변화 등으로 인한 고용둔화 가능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청년들의 구직난과 중소기업의 인력난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어 신속 대응이 필요
- 주요내용
 - (지원 규모 확대) 대학교 졸업예정자를 지원 대상에 포함하여 청년들의 노동시장 조기 진입 유도
 - (인센티브 조기 지급) 6·12·18·24개월 4회차 근속 인센티브 지급을 통해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 및 단계적인 근속 유도
- 시 행 일 : 2025년 5월 1일

구분	현행 지원요건	지원확대 요건
지원요건 확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자부터 참여가능 *졸업예정자 참여불가	• 채용일 기준 대학교 졸업예정자 참여가능
지급기간 변경	• 유형 II* 청년근속인센티브 18·24개월차 각 24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유형 II 청년근속인센티브 6·12·18·24개월차 각 120만원씩 지급(총 480만원)

○ 분쇄기·혼합기·파쇄기 및 구내운반차 안전기준 강화

- 추진배경 : 분쇄기등과 구내운반차 사용 시 근로자가 안전하게 작업할 수 있도록 안전기준 강화
- 주요내용
 - (분쇄기등) 가동 중 덮개 또는 울 등을 열어야 하는 경우 가동 정지하거나 연동장치 또는 감응형 방호장치 설치
 - (구내운반차) 후진 중 주변에 충돌 위험이 있을 시 후진경보기와 경광등 설치
- 시 행 일 : 2025년 6월 29일

○ 산업재해조사표 업무처리 절차 등 추가

- 추진배경 : 산업재해조사표 제출 활성화 및 제출 편의 도모
- 주요내용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업무 처리 흐름도 신설(처리절차를 한 눈에)
 - 산업재해조사표 서식에 접수번호·접수일자·처리기간란 신설
 - 주민등록번호란을 주민등록번호 앞 7자리로 변경(개인정보 보호)
 - 성별 기입란 삭제
- 시 행 일
 - 2025년 6월 1일

○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업 등록제도 변경

- 추진배경: 등록업체의 내실 있는 인력관리를 통한 타워크레인 관련 사망사고 예방
- 주요내용
 -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설치·해체업 인력요건의 '타워크레인 설치·해체 기능사' 포함, 유사자격인 관급·비계기능사는 '25년 자격 취득자까지 인정
 -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설치·해체업의 보유 인력 변경 시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변경 등록해야 함
- 시 행 일
 - (설치·해체업 인력요건 변경): 2025년 1월 31일 이후
 - (설치·해체업 보유 인력 변경등록 의무화): 2025년 4월 29일 이후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 화재·폭발 예방조치 강화

- 추진배경 : 인화성 물질 저장·취급설비의 외부 화염에 의한 화재·폭발사고 예방
※ '18.10.7. 경기도 고양시 소재 저유시설에서 풍등에 의한 화재 발생
- 주요내용
 - 인화성 액체·가스 저장·취급설비에 외부 화염의 유입 방지를 위해 통기관에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를 설치
 - 화염방지 기능이 있는 통기밸브는 한국산업표준이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설치 - 개정된(' 22.10.18.)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의 부칙(제367호) 제7조에 따라 2025년 10월 17일까지 설치 완료해야 함
- 시 행 일 : 2025년 10월 18일

○ 소부장법 관련 사업장에 대한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신속화

- 추진배경 : 동일 설비 증설이 잦은 반도체 공장 등은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기간 동안 신규 설비 가동이 지연되어 산업 경쟁력 약화
- 주요내용
 - (전담직원) 반도체 등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 및 공급망 안정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67조에 따른 핵심전략기술·공급망안정품목과 관련한 설비 보유 사업장에서 요청 시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 심사 전담 직원을 지정
 - (우선심사) 지정된 전담 직원은 해당 사업장의 공정안전보고서를 우선적으로 심사하여 심사 처리 기간 단축 유도
- 시행일 : 2025년 5월 30일

○ 안전교육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해야

- 추진배경 : 비상상황에 따른 대피방법 등에 대한 사전 안전교육을 모든 근로자에게 제공할 필요
- 주요내용
 - 근로자·특수형태근로종사자 및 관리감독자의 안전보건교육 내용에 '화재·폭발 시 대피에 관한 사항' 포함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 관리감독자 안전보건교육 시간 감면 사유 신설

- 추진배경 : 타법령에 따라 안전교육을 이수하여 중복되는 교육을 감면하는 규정이 관리감독자에게도 적용할 필요
- 주요내용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1 제1호에 따른 사업* 및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 도매업, 숙박 및 음식업에 종사하는 관리감독자의 교육시간 1/2 감면
 - * 「광산안전법」, 「원자력안전법」, 「항공안전법」, 「선박안전법」 적용 사업
 - 「원자력안전법」, 「항만안전특별법」,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정기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정기교육 시간 감면
 - 「항만안전특별법」에 따른 신규안전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채용 시 교육시간 감면
 - 「원자력안전법」에 따른 방사선작업종사자 신규교육 중 직장교육 이수 시, 그 시간만큼 방사선 업무에 관계되는 작업에 대한 특별교육 시간 감면
- 시행일 : 2025년 6월 1일

3. 폭염… 2시간 마다 20분 휴식 의무화

* 2025. 7. 17.부터

- 고용노동부는 폭염 상황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 이번 규칙 개정은 지난해 10월 22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 이후, 작년 여름까지 가이드 방식으로 운영해 온 냉방·통풍장치 설치, 휴식부여 등 사업주 보건조치 사항들을 규칙에 명문화함으로써 무더위 속에서 일하는 노동자의 휴식권과 건강권을 한층 강화한 데 의의가 있다.

① 31도 이상 폭염작업 시 보건조치 사항

- 노동자가 체감온도 31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2시간 이상 작업할 경우 사업주는 실내·옥외 구분 없이 냉방·통풍장치 설치·가동, 작업시간대 조정 등 폭염 노출을 줄일 수 있는 조치, 주기적인 휴식부여 중 어느 하나 이상의 조치를 해야 한다.
- 다만, 냉방·통풍장치를 설치·가동하거나 작업시간대를 조정하는 등의 조치에도 불구하고 해당 작업장소의 체감온도가 31도 이상인 경우에는 작업특성에 맞게 주기적으로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② 33도 이상 폭염작업 시 ‘매 2시간 이내 20분 이상 휴식부여’

- 체감온도가 33도 이상이 되는 작업장소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 2시간마다 2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해야 한다. 이때, 현장 여건에 따라 1시간마다 10분 이상의 휴식을 부여하는 등 다양하게 가능

- 다만,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자의 체온상승을 줄일 수 있는 개인용 냉방장치를 지급·가동하거나 냉각 의류 등 개인용 보냉장구를 지급·착용하게 한 경우 예외 인정

작업의 성질상 휴식을 부여하기 매우 곤란한 경우란

시간을 특정하여 휴식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곤란한 경우이며

- 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른 재난의 수습 및 예방 등 사람의 생명과 안전 등과 직결되는 작업
- ② 갑작스러운 시설·설비의 장애·고장 등 돌발적인 상황이 발생하여 이를 수습하기 위해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작업
- ③ 공항·항만 등에서 항공기 등 운항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는 작업
- ④ 콘크리트타설 등 구조물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작업 등

③ 시원한 물 충분히 비치

-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휴식 부여와 함께 충분한 수분 공급이 필수적인 만큼, 작업 중 땀을 많이 흘리게 되는 장소에 소금과 음료수(생수 등)를 충분히 섭취할 수 있도록 갖추어 두어야 함

④ 온열질환자(의심자) 발생 시 119신고

- 폭염작업을 하던 노동자가 두통, 어지러움, 근육경련, 의식저하 등 온열질환 증상을 보이거나 의심되는 경우 지체없이 119에 신고가 원칙
- 이외에도 온열질환자(또는 의심자)가 발생한 해당 작업 및 그와 동일한 작업은 중단하고, 냉방장치 가동, 휴식시간 부여 등의 온열질환 예방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미흡한 경우 즉시 개선해야 함

⑤ 35도 이상 폭염작업 시 추가조치

- 폭염이 계속되어 온도가 상승하는 경우 온열질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을 권고한다.
 - **35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옥외작업 중지,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 **38도 이상 폭염작업:** ▲매시간 15분씩 휴식공간에서 휴식 제공,
▲무더위 시간대(14~17시)에는 재난 및 안전관리 등에 필요한 긴급조치 작업 외 옥외작업 중지, ▲열사병 등 온열질환 민감군에 대하여 옥외작업 제한, ▲업무담당자를 지정하여 근로자의 건강상태 확인

⑥ 폭염 취약노동자 보호를 위한 범정부 차원의 예방활동 강화

- 50인 미만 소규모 폭염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서는 이동식에어컨, 제빙기 등 온열질환 예방 장비 등을 7월 말까지 신속 지원
- 공항 지상조업, 농업 계절근로, 별목 등 폭염 취약작업을 하는 노동자의 건강 보호를 위해 관계부처와 유기적으로 협업하여 예방 활동을 전개
-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사업장은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업하여 17개의 모국어로 제작한 「폭염안전 5대 기본수칙」을 안내하고 합동 현장 점검을 추진
- 택배·배달 등 이동노동자의 온열질환 예방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플랫폼 운영사 등과 함께 협업을 강화하고, ‘시원한 물과 쉼터 제공’, ‘쉬어가며 배달하기’ 등을 공동으로 추진하여 이동노동자 보호를 위한 업계의 실천을 지원
 - 또, 배달 및 택배업체 대상으로 얼음물 제공, 주기적인 휴식부여 등을 적극 지도

⑦ 폭염 고위험사업장에 대한 불시 지도·점검

○ 고용노동부는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불시 지도·점검을 강화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7월 21일부터 9월 30일까지 온열질환자(의심자)가 발생했거나, 법 위반 제보가 있는 사업장, 건설·조선·물류·택배 및 이주노동자 다수 고용 등 폭염 고위험 사업장을 중심으로 「폭염안전 5대 수칙」과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여부에 대하여 불시 지도·점검(약 4천개소)을 실시
- 지도·점검 과정에서 발견한 법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우선 시정조치하여 즉시 개선토록 할 방침이다. 열사병으로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작업중지 후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에 대한 수사를 엄정하게 진행한다.

○ 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시행 첫해인 만큼 2시간마다 20분 이상 휴식부여 등 규칙 개정안이 현장에서 철저히 준수될 수 있도록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겠다”라고 말하면서,

- “이동노동자 등이 소외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일하시는 분들이 폭염으로부터 보호될 수 있도록 총력 대응하겠다” 라고 밝혔다.

첨부 2 : 폭염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 시행

4. 육아휴직 대체인력 채용하면 추가 지원금 받아

❖ 처음으로 육아휴직 대체인력을 채용한 50인 미만 기업에게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 대상 기업

- 최근 3년간(22~24년) 대체인력지원금을 지원받은 이력이 없는 기업
- '25.1.1. 이후 육아휴직에 대한 대체인력을 고용한 기업
- 대체인력 채용일 현재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이며,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가 50인 미만인 기업

□ 지원 내용

- 채용 후 3개월과 6개월 시점에 각 100만원씩 총 200만원 지원
- 대체인력을 2인 이상 채용했다라도 기업당 최초 사례 1명에 대해서만 지원(200만원 한도)

□ 지원 절차

- 기업이 육아휴직 대체인력지원금 신청시 '대체인력 문화 확산 지원금'을 함께 신청 → 고용센터가 접수하고 고용노동부 본부가 요건 충족 여부 확인 후 대중소상생재단이 지원금 지급

〈대체인력 문화확산 지원금 지급 절차〉

지원금 접수	지원요건 심사	지원대상자 통보	지원금 지급 및 결과 회신	지급여부 입력
고용센터 (고용24)	고용부 본부	고용부 본부	대중소상생재단	고용부 본부

5. 체불 근로자 생계안정 지원, 금리는 단 1%

- 고용노동부와 근로복지공단은 임금체불 청산 및 체불근로자 생계지원을 위한 ‘체불청산지원용자’ 사업에 추가경정예산 81억 원을 편성하면서
 - 7.15.(화)부터 10.14.(화)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를 인하한다.
- ‘체불청산지원용자’ 사업은 체불청산 의지가 있는 사업주 또는 체불로 생계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 용자를 시행하는 사업으로
 - 사업주용자는 사업주당 1억 5,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신용 3.7%, 담보 2.2% 금리로, 근로자생계비용자는 근로자 1인당 1,000만 원 한도 내 체불액에 대해 연 1.5% 금리로 용자를 시행해왔다.
- 조속한 체불임금 청산 및 피해근로자 지원을 위한 이번 추경예산으로 7.15.부터 10.14.까지 3개월간 한시적으로 금리 인하를 시행하며
 - 사업주용자는 1%p 인하된 신용 2.7%, 담보 1.2% 금리를, 근로자용자는 0.5%p 인하된 1% 금리가 적용된다.
- 사업주용자를 통해 체불을 청산하고자 하는 사업주는 지방노동 관서에서 용자대상사업주 확인을 받은 후 근로복지공단을 방문하여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4.까지 금융기관과 용자계약을 체결하고 용자를 실행*한 경우에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실행일은 용자금이 근로자 계좌로 입금된 날)
- 근로자용자를 희망하는 근로자는 근로복지넷(www.workdream.net)에서 용자 신청을 할 수 있으며, 7.15.부터 10.14.까지 용자신청서를 제출한 경우 인하된 금리를 적용받을 수 있다.

6.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자진납부 기간 운영

○ 고용노동부는 7월 14일(월)부터 8월 31일(일)까지 약 7주간 대지급금 변제금 자진납부 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 이는 작년 8월 임금채권보장법 개정으로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신용제재가 도입됨에 따라, 올해부터 본격적인 제재가 시행되기에 앞서 사업주들에게 자진 납부를 통해 제재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고 1년 경과, 2천만원 이상 미납한 사업주

○ 고용노동부는 대지급금 지급 후 1년 이상 경과하고 미회수금액이 2,000만원 이상인 경우 미회수금과 해당 사업주의 인적사항 등을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제공하게 되며, 이 경우 사업주는 금융기관의 대출 및 신용카드 발급 제한, 이율 차등 등 불이익한 조치를 받을 수 있다.

- '24.8.7. 이후 대지급금이 지급되어 현재까지 변제금을 미납한 사업주를 대상으로 납입고지서와 함께 제재 사항을 안내하는 리플렛을 배부할 계획이며, 자진납부 기간 내 변제금 전액을 납부한 사업주는 제재 대상에서 즉시 제외된다.

○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대지급금 지급 사업주들이 자진납부기간을 잘 활용하여 밀린 변제금을 납부하고 금융 불이익을 받지 않길 바란다”라며, “고용노동부는 앞으로도 대지급금 제도의 안정적 운영을 위해 변제금 미납 사업주에 대한 제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 대지급금 변제금 미납 사업주 신용제재 관련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www.moel.go.kr: 고용노동부-정책소개-정책자료실) 또는 **근로복지공단 누리집** (welfare.comwel.or.kr: 근로복지넷-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

7.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기획감독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7.23.(수) 언론에 보도된 전남 나주 소재 벽돌 제조 사업장에서 외국인 노동자가 벽돌 제품과 함께 묶인 채 지게차로 옮겨지는 등 노동권을 위협받는 사태가 발생한 점을 인지하고, 해당 사업장에 대해 즉시 기획감독에 착수한다고 밝혔다.
 - 고용노동부는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감안하여,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폭행, 직장 내 괴롭힘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사실관계 확인과 함께,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전반에 대한 감독까지 실시한다는 입장이다.
- 아울러, 여전히 일부 노동 현장에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차별과 가혹행위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한 만큼, 유사한 사건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동 여건이 열악한 농촌 지역을 중심으로 다양한 기관의 제보, 과거 신고 사건 이력 분석 등을 통해 추가적인 사업장 기획 감독을 추진할 예정이다.
-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번 사건은 사회적 약자인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으로 목과할 수 없는 중대한 범죄이며 공동체의 가치를 훼손”하는 것이라며 “법 위반 사항이 확인될 경우 엄정하게 대응하고, 앞으로 외국인 노동자의 노동권을 두텁게 보호할 수 있도록 외국인 고용사업장에 대한 선제적 예방 감독도 더욱 철저히 해나가겠다.”라고 밝혔다.

8.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 산재예방 전문기관과 노동자 권익 대표 단체가 손을 맞잡고, 산업현장 안전보건 수준 향상을 위한 공동 노력에 나선다.
 - 안전보건공단(이사장 김현중, 이하 ‘공단’)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위원장 김동명, 이하 ‘한국노총’)은 6월 25일(수) 오후 2시 한국노총 본부에서 「재예방 및 산업현장 안전문화 정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 이날 협약은 근로자의 안전보건 참여 확대를 구체화하고 산업재해 예방의 현장 실행력을 확보하고자 마련되었다.
- 협약에 따라 양 기관은 △노동자의 안전보건 증진과 산업현장위험요인 발굴 △노동자 안전보건 역량 향상과 안전보건교육 활성화 △양 기관 간 유기적 네트워크 구축에 의한 안전문화 확산 등에 협력하게 된다.
 - 이번 협약은 한국노총이 공단 사업에 참여하던 방식에서 나아가, 양 기관이 기술력과 네트워크 등을 공동 활용하며 안전보건 파트너로서 해야 할 역할을 구체화하는데 그 핵심이 있다.
 - 특히, 양기관은 「위험성평가 사업」을 중심으로 노사가 함께 산업현장 위험요인을 발굴하고 개선하는 실질적인 협력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 이에 따라 전국 31개 공단 일선기관과 한국노총 산하 27개 산별연맹 및 16개 시도 지역본부 등 산업별, 지역별 네트워크를 연계해, 협력 기반을 마련하고 산업현장 전반에 안전보건 역량을 높이는 데 공동의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

9. 고용보험 15시간 기준은 역사 속으로 ...

* 고용보험, 실시간 소득 기반으로 전면 개편 추진 (입법예고 2025.7.7.~8.18.)

적용기준 변경

소정근로시간 → 실 보수

- 현재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주 15시간)이다.
 - 그러나 소정 근로시간은 현장조사를 통해서도 정확히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아 가입 누락 근로자 발굴 및 직권 가입에 어려움이 있어
 - 근로자가 고용보험에 가입되어야 함에도 사업주가 신고를 누락해서 고용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 근로자 고용보험 적용기준은 ‘소정 근로시간’에서 ‘보수’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서 - 비과세 근로소득)로 바뀐다.
 - 적용기준이 소득으로 바뀔 경우 행정자료 중 가장 광범위한 국세소득자료에 대한 전산 조회만으로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가입 누락을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 특히 국세청에서 구축 중인 실시간 소득과약 체계와 연계할 경우 미가입 근로자를 매일 확인하여 직권 가입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고용보험의 보호가 꼭 필요한 취약근로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할 수 있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
 - 또한 복수의 사업에서 일하는 근로자의 경우 각각의 사업에서 소득이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합산한 소득이 소득기준을 넘는 경우 근로자의 신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 적용기준이 되는 구체적인 소득액은 노·사·전문가의 논의를 거쳐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

징수기준 변경

월 평균보수 → 실 보수

○ 그동안 사업주는 근로자 보수에 대한 신고를 국세청과 근로복지공단에 각각 해 왔다.

- 사업주가 국세청 신고와 별개로 매년(3월15일) 근로복지공단에 근로자에게 지급한 전년도 보수총액을 신고하면 공단은 전년도 월평균보수 (보수총액÷12개월)를 기준으로 당해연도 고용·산재 보험료를 부과하고 실 보수와의 차액은 다음 연도 보수총액 신고 시 별도로 정산했다.
- 사업주는 국세신고와 고용·산재보험 보수신고를 이중으로 해야 하는 불편, 전년도 보수와의 차액을 다음 연도에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 등이 있었다.
- 「소득세법」 개정으로 '26년 1월부터 사업주가 매월 상용근로자 국세소득을 신고하게 되고, 고용·산재보험료 징수기준은 전년도 월평균보수에서 국세청에 매월 신고하는 당해 연도 실 보수로 변경된다.
- 사업주의 근로복지공단 보수총액 신고 의무는 없어지고 국세청에 신고한 소득이 고용·산재보험료 부과 기준이 되는 것이다.
- 사업주가 국세청에 소속 근로자의 근로소득을 한 번만 신고하면 고용·산재보험료 관련 보수 신고도 한 것으로 간주하여 이중신고 부담이 줄어든다.
- 당해연도 실 보수 기준으로 보험료가 부과·징수되면 다음 연도에 실제 보수와의 차액에 따라 정산된 보험료를 한꺼번에 납부해야 하는 부담도 줄어든다.

급여기준 변경

임금 → 실 보수

- 현재는 고용보험료 징수기준은 보수이고 구직급여 지급기준은 평균임금으로 서로 다르다. 구직급여를 지급하기 위해서는 이직 전 임금을 추가로 확인해야 했고, 사업주는 임금을 포함한 이직확인서를 고용센터에 신고해야 해서 신속한 급여 지급이 어려웠다.
- 구직급여 산정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인 보수로 바꾸면 보험료 징수 기준과 급여 지급 기준이 같게 된다. 아울러 구직급여액이 일시적 소득변동에 좌우되지 않도록 산정 기간도 ‘이직 전 3개월 평균임금’에서 ‘이직 전 1년 보수’로 바뀐다.
- 납부한 보험료(실 보수)에 따라 간편하게 구직급여액을 산정하고 구직급여 지급 행정절차도 빨라진다. 현재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지급하고 있는 육아휴직급여와 육아기근로시간단축급여 지급기준도 보수로 개편(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하는 등 고용보험 사업 전반의 지급기준을 보험료 징수기준과 일치시켜 나갈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향후 40일간의 입법예고 기간에 이해관계자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개정안을 올해 10월 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 이번 개정안은 노·사·전문가가 우리나라 고용안전망의 문제점과 노동시장 변화에 따른 고용안전망의 미래 방향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공감을 이룬 뜻깊은 결과물이며,
- 사회보험 중 가장 늦게 1995년에 도입된 고용보험은 지난 30년간 일자리를 잃은 국민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든든한 버팀목으로 자리매김해왔다. 이번에 마련된 개정안은 고용보험이 앞으로 모든 일하는 사람의 보편적인 고용안전망으로 한 걸음 더 발전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한 것으로, 다른 사회보험의 관리체계 개선방향도 제시할 것으로 기대한다.

10.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개시

①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시작됩니다.

- 내가 보유한 상품을 새로 옮기려는 퇴직연금사업자로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미리 확인해 볼 수 있는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가 '25.7.21. 개시된다.
- '24년 10월에 시작된 퇴직연금 실물이전 서비스는 약 8개월간 누적 8.7만건, 5.1조원의 이용실적을 기록하는 등 가입자들 사이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로 안정적으로 자리 잡았다.

퇴직연금 실물이전 현황 ('24.10.31.~'25.6.30.)

(단위 : 억원)

업권	DB			DC			IRP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유입	유출	순유입
은행	10,478	8,804	+1,673	7,217	11,717	△4,501	5,209	12,554	△7,346
증권	1,584	4,434	△2,850	8,428	3,208	+5,220	15,016	7,181	+7,835
보험	2,970	1,793	+1,177	165	885	△720	64	554	△490
합계	15,032	15,032	-	15,810	15,810	-	20,289	20,289	-

- 다만, 기존 실물이전 서비스의 경우 가입자는 이전하려는 퇴직연금사업자(수관회사)에 먼저 계좌를 개설하고 실물이전을 신청한 후에도 비로소 실물이전이 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다.
- 이로 인해 보유하고 있는 상품의 실물이전이 나중에서야 불가능함이 확인됐을 경우, 실물을전을 취소하거나 해당 상품을 해지(현금화)하고 이전하는 등 불편함을 겪는 사례가 종종 발생했다.
- 이번에 개시하는 사전조회 서비스는 이러한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실물을전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설계되었다.

○ 가입자는 은행, 증권, 보험 등 다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대상으로 보유 상품의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동시에 미리 확인하고, 조회 결과를 바탕으로 옮기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 즉 계좌를 미리 개설하지 않고도 퇴직연금사업자별 실물이전 가능 상품을 손쉽게 확인할 수 있어 가입자의 편의성이 한층 향상되고, 선택권이 확대됨에 따라 퇴직연금 시장의 건전한 경쟁도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② 서비스 신청은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서 편리하게...

○ 실물이전 방식으로 퇴직연금 계좌를 이전하려는 퇴직연금 가입자는 기존에 가입한 퇴직연금사업자(이관회사)의 홈페이지나 모바일 앱에 개설된 메뉴를 통해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할 수 있음

- 가입자는 본인이 보유하고 있는 퇴직연금 계좌*를 선택한 후 조회하고 싶은 퇴직연금사업자**(조회 대상 회사)를 지정하면 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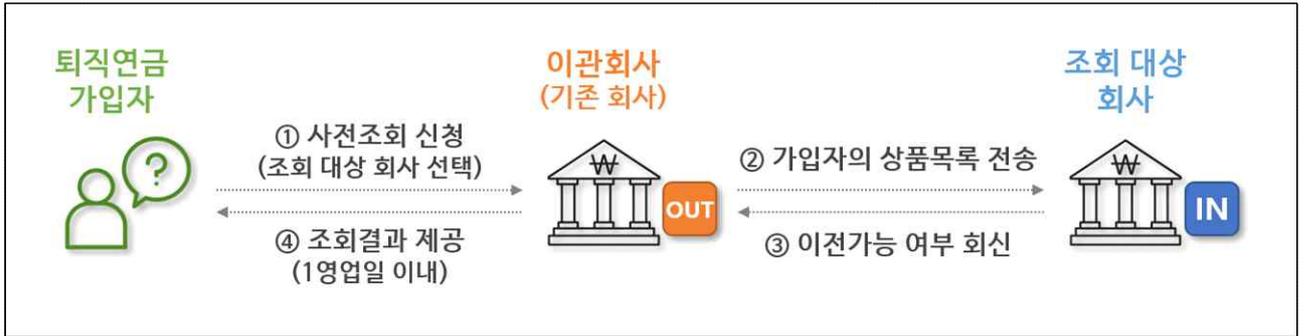
* 여러 계좌를 보유하고 있는 경우 각각 계좌를 지정하여 조회해야 하며, DB, DC, IRP 등 모든 퇴직연금 제도를 조회할 수 있음

** 총 46개 퇴직연금사업자 중 31개사를 대상으로 조회가능(자산관리업무만 수행하거나, 보험계약형 퇴직연금만 취급하는 사업자 등 제외) (☞ 붙임3 사업자 명단 참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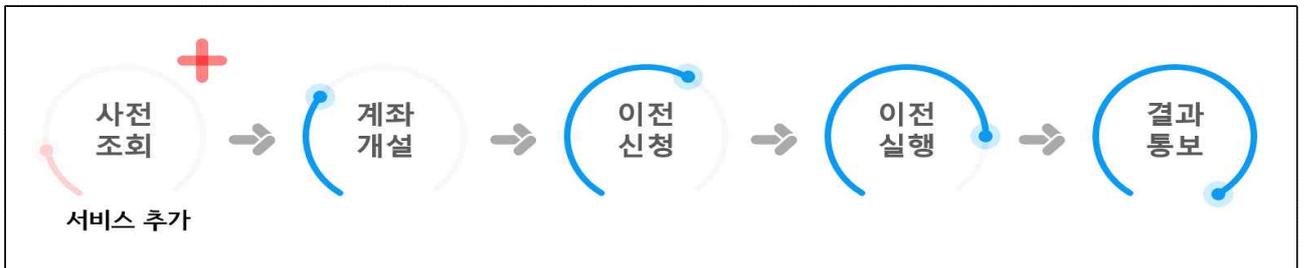
- 이관회사는 가입자의 신청을 접수한 후 조회 대상 회사들에게 가입자가 보유한 상품 목록을 전송하여 실물이전 가능 여부를 조회하게 되며, 신청한 날*의 다음 영업일까지 조회결과를 홈페이지 등을 통해 가입자에게 제공함

* 오후 3시 30분 이전 신청 건에 한하며, 이후 신청 건의 경우 2영업일 후에 조회 가능

사전조회 서비스 업무흐름도



사전조회 서비스 도입후 퇴직연금 실물이전 프로세스



② 서비스 이용 전에 반드시 확인할 사항

- 실물이전 사전조회를 신청하려는 가입자는 아래의 유의사항을 반드시 먼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실물이전 사전조회는 이관회사의 홈페이지, 모바일 앱 등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하고, 영업점 방문 등 오프라인으로는 신청이 불가능하다. 또한 사전조회 서비스 신청과 결과조회는 계좌를 이미 개설하고 있는 퇴직연금사업자를 통해서만 가능하며 옮기기를 원하는 회사에서는 조회가 불가능함
 - 실물이전 사전조회 결과를 확인한 후 실물이전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하나의 퇴직연금사업자를 정하여 퇴직연금 계좌를 개설한 후 조회 신청과는 별도로 실물이전 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함

첨부 3 :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안내자료

11.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 현장의 목소리 >

- "건설현장에 출근할 때 카드형 이수증을 항상 가지고 다녀야 해서 불편해요"
☞ 모바일 이수증을 발급받으면, 카드형 이수증 없이 스마트폰만 있으면 됩니다!
- "소규모 현장이라 관리인력도 부족한데 이수증 자료 관리도 손이 많이 가요"
☞ 「건설안전패스(앱)」를 활용하면 더 이상 종이 증빙자료를 쌓아둘 필요가 없습니다!

○ 고용노동부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은 2025년 7월 1일부터 건설근로자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 담아 건설현장에서 언제든지 제시·확인할 수 있도록 모바일 앱(건설안전패스*) 서비스를 개시한다

* 건설안전패스(Pass&Path):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Pass) 및 “안전한 길이 가장 빠른 길”(Path)이라는 의미

○ 건설현장에 취업하는 일용근로자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을 이수해야 하고, 이수증은 플라스틱 카드로 발급되었다. 이수증을 매번 건설현장에 제시해야 한다.

* 건설현장에 채용되는 모든 일용근로자는 해당 교육을 사전에 1회 이수해야 함, 건설공사의 종류와 시공 절차, 안전보건조치 등으로 구성된 4시간의 교육과정

○ 그간 근로자는 플라스틱으로 된 교육 이수증을 항상 소지하고 다녀야 하고, 분실이 잦아 안전공단 지사나 교육기관을 방문해 재발급받아야 하는 불편함이 컸다.

- 건설현장 관리자도 이수자 명단 관리와 증명을 위해 근로자들의 실물 이수증을 확인하고 일일이 복사해 모아두느라 서류 관리에 애로가 있었다.

- 이제 7월 1일부터는 건설안전패스 앱을 내려받아* 근로자는 스마트폰에 담긴 이수증으로 모든 현장에서 교육 이수 여부를 손쉽게 증명할 수 있다. 현장관리자도 앱에서 관리자 기능으로 근로자들의 이수증을 확인(바코드 스캔)함으로써 교육 이수 정보를 빠르게 확인하고 전산으로 자동 연동하여 관리할 수 있다.

* 플레이스토어(안드로이드), 앱스토어(IOS) 모두 '건설안전패스'로 검색

○ 또한, 건설안전패스는 건설현장의 근로자와 현장관리자 간 위험소통 플랫폼 기능도 가지고 있다.

- 근로자는 앱을 활용하여 작업 중에 발견한 위험요인을 실시간으로 관리자에게 신고할 수 있고, 현장관리자는 신고사항을 확인하여 신속히 개선 조치를 할 수 있다. 작업 위험요인 및 대응 요령에 대한 정보도 근로자들에게 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다.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건설안전패스의 도입으로 건설현장 근로자와 관리자 모두의 편의성이 크게 높아지고, 연간 30억 원이 들던 플라스틱 이수증 발급 비용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라고 말하고,

- “안전정보 공유 등 부가적인 기능들도 지속해서 확대하여 건설안전패스 활용성을 높여 나가겠다” 라고 말했다.

참고 : 건설안전패스(Pass&Path) 개요



건설안전패스란?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쉽게!
모바일로 만나는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



1 건설안전패스란?

건설안전패스(App)은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증을 스마트폰에서 발급·관리하고,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안전관리 활동을 지원하는 건설현장 전용 안전보건 앱입니다.

※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이란?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 건설 일용근로자는 현장에서 일하기 전에 4시간의 기초교육을 받아야 함



근로자화면



모바일 이수증



관리자 화면



안전신고·관리

2 건설안전패스(Pass&Path), 어떤 점이 좋은가요?

이수증 관리



근로자

누구나! 언제나! 어디서나! 이수증을 쉽게 발급받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더 이상 실물 이수증을 소지하거나 분실 시 재발급받지 않아도 됩니다.



관리자

일용근로자의 건설업 기초안전보건교육 이수 여부를 실시간으로 확인하고, 언제든지 근로자 출입 기록, 교육 이수 증명서 조회·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안전 관리



근로자

작업 중 현장 내 위험요인 발견 시 신속하게 신고·공유할 수 있습니다.



관리자

현장 내 위험 경보·공정별 안전수칙을 쉽고 빠르게 전파할 수 있습니다.

쉽고 편리한 **건설안전패스**
지금 바로 사용해 보세요!



12.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25.2분기)

- 고용노동부는 2025년 2분기에 제조·수입된 신규화학물질 51종의 명칭, 유해성·위험성, 근로자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사업장 조치사항 등을 공표했다.
 - 신규화학물질의 제조·수입자는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해당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는 날 30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에 유해성·위험성 조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 * 제출처: (온라인) 노동포털 누리집(labor.moel.go.kr) > 민원신청 > 산업안전분야 > 신규화학물질 검색
(등 기) 세종특별자치시 법원로 82, 화학사고예방과
 - 이번에 공표하는 신규화학물질 51종 중 메틸디클로로실란(Methyldichlorosilane), N,N-디메틸포스포라마이드 이염화물(N,N-Dimethylphosphoramidic dichloride) 등 25종에서 급성독성, 피부 부식성·자극성, 심한 눈 손상성·눈 자극성 등의 유해성·위험성이 확인되었다.
- 고용노동부는 공표 물질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사업주에게 해당 물질을 다루는 근로자들의 건강장해 예방을 위해 개인보호구 착용, 국소배기장치 설치 등 사업장에서 해야 할 조치사항을 함께 통보했다.
 - 유해성·위험성이 있는 화학제품을 제조·수입하는 사업장은 물질안전보건자료(MSDS)*를 작성·제출해야 한다. 취급사업장에서는 물질안전보건자료를 사업장 내에 게시하고, 유해성·위험성, 예방조치 문구 등이 적힌 경고표지를 제품 용기와 포장에 부착해야 한다. 또한 사업주는 화학제품을 취급하는 근로자에게 화학제품 취급 시 유의사항 등을 교육해야 한다.
 - * 물질안전보건자료(Material Safety Data Sheets, MSDS): 화학제품의 구성성분과 함유량, 유해성·위험성, 취급 및 저장방법 등을 적은 화학제품 취급설명서
- 최태호 산재예방감독정책관은 “사업주는 새로운 화학물질을 취급하는 근로자들에게 유해성·위험성 정보를 정확히 숙지할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하고, 안전 보호구 착용 등을 철저히 조치해야 한다.”라고 당부했다.

첨부 3 : 퇴직연금 실물이전 사전조회 서비스 안내자료